

장례비 최고·최저 금액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31일

고용노동부장관

I. 장례비 최고·최저 금액

장례비 최고금액은 19,279,760원으로 하고, 장례비 최저금액은 13,943,000원으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